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1 선고 2019가단5670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,372,517원 및 그 중 93,4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0. 27.부터, 188,952,750원에 대하여는 2019. 11. 8.부터, 186,706,600원에 대하여는 2019. 11. 29.부터 각 2019. 12. 3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정기

별지